

대전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1290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9.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3,875,000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6878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21. ‘C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15.부터 2002.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확정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44310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0. 30.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C의 동생이다. 피고와 C의 모친인 D는 2017. 5. 29. 사망하였는데, 피고와 C을 비롯한 D의 상속인 4인은 D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7.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2017. 5. 29. 피고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1/4)을 포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C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담보의 범위 내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8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7. 5. 29. 기준으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증명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집행권원인 판결, 이행권고결정만을 제출하였을 뿐 달리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C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무자력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